

2026년 골약동 종합감사 결과 보고

I 감사개요

- 감사기간: 2026. 4. 6.(월) ~ 4. 9.(목)
- 감사인원: 감사팀장 외 5명
- 감사범위: 2023. 3. 1. ~ 2026. 2. 28.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
- 감사방법: 서류 검토와 시설관리·운영실태 현장 확인 병행
- 감사 중점사항
 -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처리 실태
 - 직원복무, 소극적 행정처리 여부
 - 일반행정, 주민자치, 복지, 환경, 농업, 주민등록 등 업무 처리 적정성
 - 회계·계약·공사 분야 사업 추진 적정성 등

II 감사결과

-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원)

처분요구										
계	행정상 조치			현지조치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소계	주의	시정	소계	주의	시정	계	훈계	주의	
21	2	2	-	19	16	3	-	-	-	3,042,134 (회수)

- 지적사항 총괄표 비교 (단위 : 건, 명, 원)

구분	합계	행정상 조치			현지 조치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소계	주의	시정		소계	징계	훈계	주의	
2023년	33	9	5	4	24	-	-	-	-	7,598,120
2026년	21	2	2	-	19	-	-	-	-	3,042,134

지적사항 처분요구 일람표

- 행정상 조치 2건

(단위 : 원, 명)

연번	제 목	처 분 요 구 사 항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추징	회수	감액	변상	
행정상 조치: 주의 2							
1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납부 소홀	주의					
2	수입증지 수입금 납입 업무 소홀	주의					

- 현지조치 19건

(단위 : 원, 명)

연번	제 목	처 분 요 구 사 항					
		현지 조치	재정상				신분상
			추징	회수	감액	변상	
현지조치: 주의 16, 시정 3 / 재정상 3,042,134원(회수)							
1	주민자치센터 관리 업무 부적정	현지주의					
2	민방위 관리 업무 소홀	현지주의					
3	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소홀	현지시정, 현지주의		1,608, 834			
4	건설공사 대금 지급 정산 부적정	현지시정		1,433, 300			
5	건설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설정 부적정	현지주의					
6	하자보증이행 보증확보 소홀	현지시정, 현지주의					
7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 미수립 및 품의 작성 소홀	현지주의					

8	공용차량 관리에 따른 기록 관리 소홀	현지주의					
9	통합민원창구무인민원발급기 용지 관리자 지정 및 발급용지 관리 소홀	현지주의					
10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 수리 시 확인·검토 소홀	현지주의					
1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사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소홀	현지주의					
12	자활근로사업 추진 소홀	현지주의					
13	등록장애인 자격 관리 소홀	현지주의					
14	저소득 아동급식 지원사업 관리 소홀	현지주의					
15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추진 소홀	현지주의					
16	건설공사 감독일지 작성 소홀	현지주의					
17	설계도서 예정가격(공사비) 작성 부적정	현지주의					

지적사항 목록

- 행정상 조치 2건

연번	제 목	지적사항 세부내용
1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납부 소홀	-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를 수납받고 다음 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나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203건을 최소 2일에서 최장 20일까지 지연하여 납입하는 등 대형 폐기물 배출 수수료 세외수입 부과 징수결의 업무 소홀
2	수입증지 수입금 납입 업무 소홀	- 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현금 수입금을 수납받고 다음 날 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나 2023. 3.부터 2026. 2.까지 인증기 수입금 111건, 무인민원발급기 수입금 131건을 최소 2일에서 최장 11일까지 지연 납입하여 수입금 납입 업무 소홀

- 현지조치 19건

연번	제 목	지적사항 세부내용
1	주민자치센터 관리 업무 부적정	- 주민자치센터 운영 계획 및 결과 등 시에 보고(제출)하고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의무 소홀
2	민방위 관리 업무 소홀	- 민방위대원 제외 대상 신청 민원을 처리하면서 서울행정 시스템에 민원서류로 접수·등록하여 처리하지 않고, 결재권자 결재 후 민원 신청인에게 회신해야 하나 누락 - 지역민방위협의회 일체 미구성
3	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소홀	-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공사 6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부적합한 항목이나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사용내역을 청구했음에도 집행 내용의 확인 및 정산 소홀히 하여 준공금 과다 지급
4	건설공사 대금 지급 정산 부적정	-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의 기재사항이 포함된 가입 및 납부증명원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보험료 정산하지 않고 대금 지급
5	건설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설정 부적정	- 건설공사 하자보수보증기간을 설정하면서 준공검사 완료일로 하지 않고, 다른 날을 하자보수 담보 기간으로 설정
6	하자보증이행 보증확보 소홀	- 하자보수보증서 징구하지 않아 하자보증 이행관리 소홀
7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 미수립 및 품의 작성 소홀	-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을 미수립하고, 업무추진비 집행 품의서를 작성하면서 집행 대상 기재 소홀로 기준 단가 준수 여부를 판단할 수 없게 되는 등 품의서 작성 소홀
8	공용차량 관리에 따른 기록관리 소홀	- 서울행정시스템 상에서 배차신청 후 77건에 대하여 배차 신청·승인 결재받지 않음
9	통합민원창구·무인 민원발급기 용지 관리자 미지정 및 발급용지 관리 소홀	- 2024. 2. 5. 이후부터 2025. 9. 25.까지 담당공무원 등의 인사발령이 있었음에도 관리자 미지정 - 2023. 3. 1. ~ 6. 20. 기간 동안 용지 수불내역에 대한 관리 소홀
10	인감증명발급위임장 수리 시 확인·검토 소홀	- 위임장에 위임일자 등의 기재를 누락하거나 미기재된 위임장 수리, 위임장 분실, 발급 대장에 위임사항 기재 누락 등 인감증명서 위임 업무 소홀
1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 관리 소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현장관리 미 실시 -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지정동의서 등 관련 서류 누락 - 복지급여 본인관리 확인서 징구 및 담당자 의견 누락

12	자활근로사업 추진 소홀	- 2023년 ~ 2025년 자활근로사업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고,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안전교육 또한 실시하지 않음
13	등록장애인 자격 관리 소홀	- 등록장애인 장애 재판정 안내 기간 미준수 - 장애인등록 취소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등의 회수·폐기 및 사망한 장애인의 장애인등록증 부정 사용에 대한 유족 안내 미이행
14	저소득 아동급식 지원사업 관리 소홀	- 2023년~2025년 상반기까지 저소득 아동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수령증, 보안서약서,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등 예산 집행을 위한 증빙자료 누락
15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추진 소홀	- 2023년, 2024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계획 및 2023년 복지사각지대 발굴 계획 미수립
16	건설공사 감독일지 작성 소홀	-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한 공사 18건에 대하여 공사 감독자가 작성해야 할 서류 중 공사감독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등 공사감독 업무 소홀
17	설계도서 예정가격(공사비) 작성 부적정	-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한 공사 15건에 대하여 설계 도서를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건설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인의 견적서로 설계도서 예정가격(공사비)를 작성

처 분 지 시 서

골 약 동

주 의 요 구

☐ 제 목: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납부 소홀

☐ 내 용

1. 관련규정 및 판단기준

-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형폐기물은 관할 읍·면·동 또는 시장이 정한 인터넷 배출 신고시스템에 신고를 하고,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판매소에서 배출스티커를 구입한 후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 같은 조례 제23조제1항제2호에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 및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시장이 고시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 또한, 「지방회계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는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지정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이에 따라 관할 읍·면·동 또는 광양시 대형폐기물 배출신청 시스템에 신고된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부과하여 신청(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지정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아울러 2023. 4. 27. 통보된 ‘2023. 골약동 종합감사 결과 통보¹⁾’에 따르면 골약동에서는 대형폐기물 업무를 처리하면서 대형폐기물 신청 금액을 수수하고 다음 날 납입하여야 하나 지연 납입 하는 등 대형 폐기물 수수료 납부 업무를 소홀히 하여 지적받은 바 있다.

1) 감사실-3658(2023.4.27.)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그러나 골약동에서는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를 수납받고 다음 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나 아래 [표]와 같이 총 203건을 최소 2일에서 최장 20일까지 지연하여 납입하는 등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세외 수입 부과 징수결의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납입 지연 현황

연번	접수일	금고 수납일	금액(원)	지연건파	연번	접수일	금고 수납일	금액(원)	지연건파
1	2024-12-10	20241217	16,000	4	103	2025-09-09	2025-09-17	3,000	5
2	2024-12-11	20241230	4,000	12	104	2025-09-10	2025-09-17	5,000	4
3	2024-12-16	20241219	7,000	2	105	2025-09-10	2025-09-17	3,000	4
4	2024-12-16	20241219	2,000	2	106	2025-09-10	2025-09-17	22,000	4
5	2024-12-20	20241226	5,000	3	107	2025-09-11	2025-09-17	2,000	3
6	2024-12-20	20241226	3,000	3	108	2025-09-11	2025-09-17	4,000	3
7	2025-01-07	2025-01-13	8,000	3	109	2025-09-11	2025-09-17	3,000	3
8	2025-02-20	2025-03-24	5,000	20	110	2025-09-12	2025-09-17	4,000	2
9	2025-03-17	2025-03-24	6,000	4	111	2025-09-12	2025-09-17	4,000	2
10	2025-03-17	2025-03-24	46,000	4	112	2025-09-12	2025-09-17	4,000	2
11	2025-03-18	2025-03-24	3,000	3	113	2025-09-15	2025-09-23	3,000	5
12	2025-03-19	2025-03-24	3,000	2	114	2025-09-15	2025-09-23	8,000	5
13	2025-03-19	2025-03-24	7,000	2	115	2025-09-15	2025-09-23	6,000	5
14	2025-03-24	2025-04-08	2,000	10	116	2025-09-16	2025-09-23	4,000	4
15	2025-03-24	2025-04-08	5,000	10	117	2025-09-16	2025-09-23	3,000	4
16	2025-03-25	2025-04-08	12,000	9	118	2025-09-17	2025-09-23	6,000	3
17	2025-03-25	2025-04-08	20,000	9	119	2025-09-18	2025-09-23	6,000	2
18	2025-03-26	2025-04-08	44,000	8	120	2025-09-18	2025-09-23	4,000	2
19	2025-03-26	2025-04-08	2,000	8	121	2025-09-18	2025-09-23	7,000	2
20	2025-03-26	2025-04-08	21,000	8	122	2025-09-22	2025-09-29	8,000	4
21	2025-03-27	2025-04-08	3,000	7	123	2025-09-22	2025-09-29	8,000	4
22	2025-03-27	2025-04-08	3,000	7	124	2025-09-22	2025-09-29	2,000	4
23	2025-03-28	2025-04-08	2,000	6	125	2025-09-22	2025-09-29	3,000	4
24	2025-03-31	2025-04-08	4,000	5	126	2025-09-22	2025-09-29	20,000	4
25	2025-04-01	2025-04-08	2,000	4	127	2025-09-22	2025-09-29	5,000	4
26	2025-04-01	2025-04-08	3,000	4	128	2025-09-22	2025-09-29	3,000	4
27	2025-04-02	2025-04-08	4,000	3	129	2025-09-22	2025-09-29	20,000	4
28	2025-04-02	2025-04-08	9,000	3	130	2025-09-22	2025-09-29	12,000	4
29	2025-04-21	2025-04-24	2,000	2	131	2025-09-22	2025-09-29	16,000	4
30	2025-04-21	2025-04-24	4,000	2	132	2025-09-22	2025-09-29	17,000	4
31	2025-04-29	2025-05-02	3,000	2	133	2025-09-23	2025-09-29	5,000	3
32	2025-04-30	2025-05-07	3,000	2	134	2025-09-23	2025-09-29	2,000	3
33	2025-04-30	2025-05-07	10,000	2	135	2025-09-23	2025-09-29	2,000	3
34	2025-04-30	2025-05-07	14,000	2	136	2025-09-23	2025-09-29	2,000	3
35	2025-05-28	2025-06-04	6,000	3	137	2025-09-24	2025-09-29	2,000	2
36	2025-05-28	2025-06-04	7,000	3	138	2025-09-24	2025-09-29	15,000	2
37	2025-05-29	2025-06-04	3,000	2	139	2025-09-24	2025-09-29	4,000	2
38	2025-05-29	2025-06-04	5,000	2	140	2025-09-24	2025-09-29	7,000	2

연번	접수일	금고 수납일	금액(원)	잔액(원)	연번	접수일	금고 수납일	금액(원)	잔액(원)
39	2025-05-29	2025-06-04	13,000	2	141	2025-09-24	2025-09-29	2,000	2
40	2025-05-30	2025-06-11	1,000	5	142	2025-09-26	2025-10-10	5,000	4
41	2025-06-09	2025-06-18	1,000	6	143	2025-09-26	2025-10-10	4,000	4
42	2025-06-13	2025-06-18	5,000	2	144	2025-09-29	2025-10-10	4,000	3
43	2025-06-13	2025-06-18	14,000	2	145	2025-09-30	2025-10-10	4,000	2
44	2025-06-18	2025-06-26	2,000	5	146	2025-09-30	2025-10-10	15,000	2
45	2025-06-19	2025-06-30	3,000	6	147	2025-09-30	2025-10-10	8,000	2
46	2025-06-25	2025-06-30	62,000	2	148	2025-09-30	2025-10-10	3,000	2
47	2025-06-25	2025-06-30	9,000	2	149	2025-09-30	2025-10-10	1,000	2
48	2025-06-30	2025-07-03	2,000	2	150	2025-09-30	2025-10-10	7,000	2
49	2025-06-30	2025-07-03	2,000	2	151	2025-10-10	2025-10-21	2,000	6
50	2025-07-04	2025-07-14	7,000	5	152	2025-10-10	2025-10-21	35,000	6
51	2025-07-07	2025-07-14	12,000	4	153	2025-10-10	2025-10-21	5,000	6
52	2025-07-08	2025-07-14	10,000	3	154	2025-10-10	2025-10-21	7,000	6
53	2025-07-08	2025-07-14	5,000	3	155	2025-10-10	2025-10-21	12,000	6
54	2025-07-09	2025-07-14	4,000	2	156	2025-10-13	2025-10-21	3,000	5
55	2025-07-14	2025-08-05	2,000	15	157	2025-10-13	2025-10-21	20,000	5
56	2025-07-14	2025-07-17	2,000	2	158	2025-10-13	2025-10-21	2,000	5
57	2025-07-15	2025-07-23	3,000	5	159	2025-10-14	2025-10-21	13,000	4
58	2025-07-15	2025-07-23	13,000	5	160	2025-10-14	2025-10-21	46,000	4
59	2025-07-15	2025-07-23	12,000	5	161	2025-10-14	2025-10-21	26,000	4
60	2025-07-16	2025-07-23	1,000	4	162	2025-10-15	2025-10-21	20,000	3
61	2025-07-16	2025-07-23	6,000	4	163	2025-10-15	2025-10-21	5,000	3
62	2025-07-16	2025-07-23	4,000	4	164	2025-10-15	2025-10-21	26,000	3
63	2025-07-16	2025-07-23	5,000	4	165	2025-10-16	2025-10-21	6,000	2
64	2025-07-18	2025-07-23	5,000	2	166	2025-10-16	2025-10-21	1,000	2
65	2025-07-21	2025-07-29	2,000	5	167	2025-10-16	2025-10-21	7,000	2
66	2025-07-22	2025-07-29	3,000	4	168	2025-10-16	2025-10-21	3,000	2
67	2025-07-22	2025-07-29	5,000	4	169	2025-10-16	2025-10-21	4,000	2
68	2025-07-22	2025-07-29	3,000	4	170	2025-10-20	2025-10-27	3,000	4
69	2025-07-24	2025-07-29	4,000	2	171	2025-10-21	2025-10-27	4,000	3
70	2025-07-28	2025-08-05	3,000	5	172	2025-10-21	2025-10-27	9,000	3
71	2025-07-29	2025-08-05	55,000	4	173	2025-10-21	2025-10-27	6,000	3
72	2025-07-31	2025-08-05	2,000	2	174	2025-10-21	2025-10-27	4,000	3
73	2025-08-01	2025-08-25	3,000	14	175	2025-10-21	2025-10-27	3,000	3
74	2025-08-05	2025-08-13	14,000	5	176	2025-10-21	2025-10-27	14,000	3
75	2025-08-05	2025-08-13	6,000	5	177	2025-10-21	2025-10-27	5,000	3
76	2025-08-05	2025-08-13	3,000	5	178	2025-10-21	2025-10-27	5,000	3
77	2025-08-06	2025-08-13	5,000	4	179	2025-10-22	2025-10-27	6,000	2
78	2025-08-07	2025-08-13	2,000	3	180	2025-10-22	2025-10-27	3,000	2
79	2025-08-08	2025-08-13	4,000	2	181	2025-10-22	2025-10-27	6,000	2
80	2025-08-08	2025-08-13	16,000	2	182	2025-10-22	2025-10-27	4,000	2
81	2025-08-08	2025-08-13	2,000	2	183	2025-10-22	2025-10-27	6,000	2
82	2025-08-13	2025-08-25	3,000	6	184	2025-10-22	2025-10-27	36,000	2
83	2025-08-13	2025-08-25	6,000	6	185	2025-10-23	2025-10-29	7,000	3
84	2025-08-14	2025-08-25	6,000	5	186	2025-10-23	2025-10-29	2,000	3
85	2025-08-18	2025-08-25	5,000	4	187	2025-10-24	2025-10-29	3,000	2
86	2025-08-19	2025-08-25	6,000	3	188	2025-10-24	2025-10-29	25,000	2
87	2025-08-19	2025-08-25	5,000	3	189	2025-10-24	2025-10-29	13,000	2
88	2025-08-19	2025-08-25	9,000	3	190	2025-10-29	2025-11-05	2,000	4
89	2025-08-20	2025-08-25	2,000	2	191	2025-10-29	2025-11-05	3,000	4

연번	접수일	금고 수납일	금액(원)	지정회계과 비고	연번	접수일	금고 수납일	금액(원)	지정회계과 비고
90	2025-08-20	2025-08-25	8,000	2	192	2025-10-29	2025-11-05	6,000	4
91	2025-08-27	2025-09-02	4,000	3	193	2025-10-31	2025-11-05	2,000	2
92	2025-08-27	2025-09-02	6,000	3	194	2025-10-31	2025-11-05	13,000	2
93	2025-08-28	2025-09-02	8,000	2	195	2025-12-26	2025-12-31	8,000	2
94	2025-08-28	2025-09-02	4,000	2	196	2025-12-26	2025-12-31	8,000	2
95	2025-09-01	2025-09-08	2,000	4	197	2026-01-29	20260203	5,000	2
96	2025-09-02	2025-09-08	3,000	3	198	2026-01-29	20260203	10,000	2
97	2025-09-03	2025-09-08	4,000	2	199	2026-02-05	20260210	3,000	2
98	2025-09-03	2025-09-08	2,000	2	200	2026-02-05	20260210	5,000	2
99	2025-09-03	2025-09-08	6,000	2	201	2026-02-05	20260210	7,000	2
100	2025-09-03	2025-09-08	2,000	2	202	2026-02-26	20260305	21,000	3
101	2025-09-08	2025-09-17	6,000	6	203	2026-02-26	20260305	61,000	3
102	2025-09-08	2025-09-17	6,000	6					

□ 처분지시

- 골약동장은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납부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주의)

골 약 동

주 의 요 구

☐ 제 목: 수입증지 수입금 납입 업무 소홀

☐ 내 용

1. 관련규정 및 판단기준

- 「지방회계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 그 다음날까지, 그밖의 경우에는 5일이 되는 날까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광양시 수입증지 조례」 제7조에서는 수입금이 현금으로 수납된 경우에는 징수한 그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증기 총 수입대금 중 현금 수입금은 부과 후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골약동에서는 2023. 3.부터 2026. 2.까지 아래 [표1, 2]와 같이 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현금 수입금을 다음날 납입하지 않고, 인증기 수입금 111건, 무인민원발급기 수입금 131건을 최소 2일에서 최대 11일 지연 납입한 사실이 있다.

[표 1] 인증기 수입 납부 지연 현황

연번	인증기수입일	금액(원)	수 납 일	지연(일)	연번	인증기수입일	금액(원)	수 납 일	지연(일)
1	20230322	22400	2023-03-27	2	57	20240223	70800	2024-02-29	3
2	20230330	14700	2023-04-04	2	58	20240226	4000	2024-03-04	3
3	20230428	24800	2023-05-03	2	59	20240227	11100	2024-03-04	2
4	20230502	1400	2023-05-11	5	60	20240412	23100	2024-04-17	2
5	20230508	21700	2023-05-11	2	61	20240508	25500	2024-05-13	2
6	20230518	25600	2023-05-23	2	62	20240510	12900	2024-05-17	3
7	20230531	15500	2023-06-07	3	63	20240513	36600	2024-05-17	2
8	20230601	14900	2023-06-07	2	64	20240516	19400	2024-05-21	2
9	20230607	4100	2023-06-13	3	65	20240527	23100	2024-05-30	2
10	20230608	24500	2023-06-13	2	66	20240725	3900	2024-07-30	2
11	20230622	13200	2023-06-27	2	67	20240814	22000	2024-08-20	2
12	20230630	17800	2023-07-10	5	68	20240905	16700	2024-09-10	2
13	20230703	14900	2023-07-12	6	69	20241010	2900	2024-10-15	2
14	20230704	20700	2023-07-12	5	70	20241016	10200	2024-10-21	2
15	20230705	7100	2023-07-12	4	71	20241025	11000	2024-10-30	2
16	20230706	7100	2023-07-12	3	72	20241114	16100	2024-11-19	2
17	20230717	15800	2023-07-27	7	73	20241210	23600	2024-12-16	3
18	20230718	6900	2023-07-27	6	74	20241211	10400	2024-12-16	2
19	20230719	3400	2023-07-27	5	75	20241227	23600	2025-01-02	2
20	20230720	10400	2023-07-27	4	76	20241231	18600	2025-01-06	2
21	20230721	22500	2023-07-27	3	77	20250102	18000	2025-01-08	3
22	20230724	4200	2023-07-27	2	78	20250103	13100	2025-01-08	2
23	20230727	10600	2023-08-01	2	79	20250106	30100	2025-01-09	2
24	20230801	23200	2023-08-04	2	80	20250108	15800	2025-01-14	3
25	20230808	10300	2023-08-14	3	81	20250109	23800	2025-01-14	2
26	20230809	14400	2023-08-14	2	82	20250113	18200	2025-01-17	3
27	20230824	13800	2023-09-04	6	83	20250114	16500	2025-01-17	2
28	20230825	1000	2023-09-05	6	84	20250116	36900	2025-01-22	3
29	20230828	12000	2023-09-05	5	85	20250117	21300	2025-01-22	2
30	20230829	14300	2023-09-05	4	86	20250120	24400	2025-01-23	2
31	20230830	13800	2023-09-05	3	87	20250123	10800	2025-02-04	3
32	20230831	3800	2023-09-05	2	88	20250124	17400	2025-02-04	2
33	20230905	10000	2023-09-21	11	89	20250131	21900	2025-02-06	3
34	20230906	8100	2023-09-21	10	90	20250203	34400	2025-02-06	2
35	20230907	8300	2023-09-21	9	91	20250204	21900	2025-02-07	2
36	20230908	5200	2023-09-21	8	92	20250217	400	2025-02-25	5
37	20230911	20100	2023-09-21	7	93	20250220	3000	2025-02-25	2
38	20230912	15600	2023-09-21	6	94	20250414	12500	2025-04-17	2
39	20230913	13600	2023-09-21	5	95	20250415	33200	2025-04-18	2
40	20230914	7300	2023-09-21	4	96	20250425	9700	2025-05-07	2
41	20230915	6600	2023-09-21	3	97	20250429	10800	2025-05-07	3
42	20230918	30600	2023-09-21	2	98	20250430	8600	2025-05-12	5
43	20230925	16400	2023-10-04	2	99	20250501	12800	2025-05-12	4
44	20231102	15100	2023-11-07	2	100	20250502	33600	2025-05-12	3
45	20240205	30400	2024-02-21	9	101	20250507	32500	2025-05-13	3
46	20240206	15400	2024-02-21	8	102	20250508	22500	2025-05-13	2
47	20240207	6100	2024-02-23	9	103	20250605	11800	2025-06-11	2
48	20240208	21500	2024-02-23	8	104	20250616	14800	2025-06-19	2
49	20240213	35800	2024-02-27	9	105	20250623	14800	2025-06-26	2
50	20240214	34100	2024-02-27	8	106	20250630	15300	2025-07-03	2
51	20240215	23300	2024-02-27	7	107	20250716	46200	2025-07-21	2
52	20240216	29500	2024-02-27	6	108	20250808	8600	2025-08-13	2
53	20240219	2400	2024-02-29	7	109	20250811	600	2025-08-22	7
54	20240220	21700	2024-02-29	6	110	20251021	6200	2025-10-27	3
55	20240221	18600	2024-02-29	5	111	20251022	2000	2025-10-27	2
56	20240222	6200	2024-02-29	4					

[표 2] 무인민원발급기 수입 납부 지연 현황

연번	인증기수입일	금액(원)	수 납 일	지연(일)	연번	인증기수입일	금액(원)	수 납 일	지연(일)
1	20230301	1900	2023-03-08	4	67	20240516	4800	2024-05-21	2
2	20230304	2300	2023-03-08	2	68	20240527	4800	2024-05-30	2
3	20230322	3300	2023-03-27	2	69	20240725	1900	2024-07-30	2
4	20230330	3400	2023-04-04	2	70	20240814	2300	2024-08-20	2
5	20230413	1700	2023-04-18	2	71	20240815	1400	2024-08-20	2
6	20230428	900	2023-05-03	2	72	20240905	2400	2024-09-10	2
7	20230508	1800	2023-05-11	2	73	20241016	3700	2024-10-21	2
8	20230518	700	2023-05-23	2	74	20241025	6000	2024-10-30	2
9	20230531	800	2023-06-07	3	75	20241026	1200	2024-10-30	2
10	20230601	1400	2023-06-07	2	76	20241114	500	2024-11-19	2
11	20230607	800	2023-06-13	3	77	20241210	600	2024-12-16	3
12	20230608	3100	2023-06-13	2	78	20241211	1100	2024-12-16	2
13	20230622	3400	2023-06-27	2	79	20241227	2300	2025-01-02	2
14	20230630	1100	2023-07-10	5	80	20241228	500	2025-01-02	2
15	20230701	700	2023-07-12	7	81	20241230	1900	2025-01-06	3
16	20230703	2900	2023-07-12	6	82	20241231	1600	2025-01-06	2
17	20230704	1000	2023-07-12	5	83	20250102	2400	2025-01-08	3
18	20230705	3500	2023-07-12	4	84	20250103	3300	2025-01-08	2
19	20230706	1900	2023-07-12	3	85	20250106	3600	2025-01-09	2
20	20230707	2200	2023-07-12	2	86	20250108	200	2025-01-14	3
21	20230717	1900	2023-07-27	7	87	20250109	1300	2025-01-14	2
22	20230718	1200	2023-07-27	6	88	20250113	1400	2025-01-17	3
23	20230719	1000	2023-07-27	5	89	20250114	4300	2025-01-17	2
24	20230720	700	2023-07-27	4	90	20250116	2100	2025-01-22	3
25	20230721	2900	2023-07-27	3	91	20250117	3300	2025-01-22	2
26	20230722	700	2023-07-27	3	92	20250118	1600	2025-01-22	2
27	20230727	1000	2023-08-01	2	93	20250120	4900	2025-01-23	2
28	20230801	2200	2023-08-04	2	94	20250123	1700	2025-02-04	3
29	20230808	5100	2023-08-14	3	95	20250124	3700	2025-02-04	2
30	20230809	2100	2023-08-14	2	96	20250125	400	2025-02-04	2
31	20230824	1100	2023-09-04	6	97	20250131	2900	2025-02-06	3
32	20230825	1500	2023-09-05	6	98	20250203	4900	2025-02-06	2
33	20230828	3400	2023-09-05	5	99	20250204	4000	2025-02-07	2
34	20230830	2700	2023-09-05	3	100	20250220	2200	2025-02-25	2
35	20230831	1400	2023-09-05	2	101	20250414	900	2025-04-17	2
36	20230905	1500	2023-09-21	11	102	20250415	200	2025-04-18	2
37	20230906	1700	2023-09-21	10	103	20250425	2400	2025-05-07	5
38	20230907	2000	2023-09-21	9	104	20250426	200	2025-05-07	5
39	20230908	1400	2023-09-21	8	105	20250428	1100	2025-05-07	4
40	20230911	2000	2023-09-21	7	106	20250429	400	2025-05-07	3
41	20230912	800	2023-09-21	6	107	20250430	2500	2025-05-12	5
42	20230913	2500	2023-09-21	5	108	20250501	1300	2025-05-12	4
43	20230914	1400	2023-09-21	4	109	20250502	3500	2025-05-12	3
44	20230915	1700	2023-09-21	3	110	20250503	1000	2025-05-13	4
45	20230916	700	2023-09-21	3	111	20250507	1200	2025-05-13	3
46	20230918	400	2023-09-21	2	112	20250508	2700	2025-05-13	2
47	20230925	500	2023-10-04	2	113	20250510	200	2025-05-14	2
48	20231102	2800	2023-11-07	2	114	20250605	200	2025-06-11	2
49	20240205	1900	2024-02-21	9	115	20250606	1200	2025-06-11	2
50	20240206	1700	2024-02-21	8	116	20250616	2200	2025-06-19	2
51	20240207	1900	2024-02-23	9	117	20250623	1100	2025-06-26	2
52	20240208	200	2024-02-23	8	118	20250630	1100	2025-07-03	2
53	20240209	3800	2024-02-27	10	119	20250716	1500	2025-07-21	2
54	20240213	5900	2024-02-27	9	120	20250731	1500	2025-08-05	2
55	20240214	1600	2024-02-27	8	121	20250808	2300	2025-08-13	2
56	20240215	1600	2024-02-27	7	122	20251021	500	2025-10-27	3
57	20240216	2000	2024-02-27	6	123	20251022	1500	2025-10-27	2
58	20240217	1000	2024-02-27	6	124	20251101	1400	2025-11-05	2
59	20240219	1500	2024-02-29	7	125	20240301	2300	2024-03-06	2
60	20240220	1300	2024-02-29	6	126	20240412	2200	2024-04-17	2
61	20240221	2000	2024-02-29	5	127	20240413	500	2024-04-17	2
62	20240222	1600	2024-02-29	4	128	20240508	1300	2024-05-13	2
63	20240223	800	2024-02-29	3	129	20240510	2100	2024-05-17	3
64	20240224	200	2024-02-29	3	130	20240511	1700	2024-05-17	3
65	20240226	1700	2024-03-04	3	131	20240513	2200	2024-05-17	2
66	20240227	600	2024-03-04	2					

□ 처분지시

- 골약동장은 「지방회계법」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증지 납입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현 지 처 분 지 시 서

감사결과 현지처분지시서

2026년도 골약동 종합감사(자체) 시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 지시하니, 조속히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종합감사 처분 결과 보고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본 조치지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때는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따라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5.

감사반장 ○○○ (인)

소 속	시행년도	지적결과 (주의, 개선 등)	재정상 조치		조치인원
			방 법	금 액(원)	
골약동	2023~2026	주의	-	-	-

☐ 제 목: 주민자치센터 관리 업무 부적정

☐ 내 용

1. 관련규정 및 판단기준

-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제7항 및 제14조에 따르면 서비스 개선 비용은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해야 하고 서비스 개선 비용 수입과 지출 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를 반기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그 결과를 게시 및 공고의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공개 하도록 되어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그러나 골약동에서는 2023~2025년 기간 중 상반기에는 서비스개선비용 보고 및 주민 공개를 하지 않았으며, 2023년, 2024년에는 주민자치위원회 및 시장에게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아 주민들의 알권리를 훼손하였다.

【표】 서비스 개선 비용 수입과 지출 미공개 현황

연도	상반기			하반기		
	위원회심의	시장보고	주민공고	위원회심의	시장보고	주민공고
2023년	×	×	×	○	○	×
2024년	×	×	×	○	○	×
2025년	×	×	×	○	○	○

☐ **처분지시**

- 골약동장은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현지처분지시서

2026년도 골약동 종합감사(자체) 시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 지시하니, 조속히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종합감사 처분 결과 보고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본 조치지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때는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따라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5.

감사반장 ○○○ (인)

소 속	시행년도	지적결과 (주의, 개선 등)	재정상 조치		조치인원
			방 법	금 액(원)	
골약동	2023~2026	주의	-	-	-

☐ 제 목: 민방위 관리 업무 소홀

☐ 내 용

가.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면제신청 지연 처리

1. 관련규정 및 판단기준

-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교육훈련의 면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교육훈련의 면제)에 따르면 민방위 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하며, 교육훈련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관할 읍·면·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민원의 접수)에 따르면 민원은 민원실(전자민원창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접수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발송을 주관하는 부서(이하 “문서담당부서”라 한다) 또는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라 한다)에서 민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 또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에 따르면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그러나, 골약동에서는 2023년부터 현재까지 아래[표]와 같이 「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교육훈련의 면제)에 의한 민방위교육훈련 면제신청서와 「민방위기본법」 제18조(조직)의 규정에 의한 민방위 대원 제외대상 신청민원을 처리하면서 새올행정시스템에 민원서류로 접수 등록하여 처리하지 않고 결재권자 결재 후 그 결과를 민원신청인에게 회신해야 하나 누락하는 등 민방위 민원서류 처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표1 - 민방위 교육 및 훈련 면제자 처리내역 불일치 내역 】

연도별	계	면 제	유 예	민원문서 회신내역	비고
2023	2	2	-	3	
2024	4	4	-	1	
2025	7	6	1	4	

나. 지역민방위협의회 구성 운영 소홀

1. 관련규정 및 판단기준

- 「민방위기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읍·면·동 민방위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읍·면·동협의회의 위원장은 동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경찰서의 지서 또는 파출소의 장, 예비군 지휘권을 가진 군부대장이 지정하는 예비군 중대장 1명, 그밖에 민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시행규칙 제3조(지역민방위협의회의 기능)에는 지역민방위협의회는 민방위에 관한 각 기관 및 단체 간의 업무조정과 협조, 법 제32조의 2에 따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 민방위대 편성 제외 대상자의 심사 등의 기능을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 따라서 골약동에서는 지역민방위협의회를 구성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관 및 단체와 긴밀한 협조 체계에서 협의회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협의회 구성원의 변동 시 정비를 해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그러나 골약동에서는 그동안 지역민방협의회를 일체 구성하지 않아 민방위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처분지시

- 골약동장은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방위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준수하여 처리하시기 바라며, 지역민방위협의회를 구성하여 민방위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현지처분지시서

2026년도 골약동 종합감사(자체) 시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 지시하니, 조속히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종합감사 처분 결과 보고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본 조치지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때는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따라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5.

감사반장 ○○○ (인)

소 속	시행년도	지적결과 (주의, 개선 등)	재정상 조치		조치인원
			방 법	금 액(원)	
골약동	2023~2026	시정, 주의	회수	1,608,830	-

☐ 제 목: 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소홀

☐ 내 용

1. 관련규정 및 판단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에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하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따라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제8조에 따라 수급인이 법 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보건 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준공대가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준공대금 청구 시 원가계산서에 계상된 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받아 상기 기준에 따른 사용과 증빙자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는 감액조정하거나 반환 요구하여야 하며, 감액조정에 따른 정산내역이 부적정 시 청구내역을 반송하여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골약동에서는 [표]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부적합한 항목이나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내용의 확인 및 정산 등을 소홀히 함에 따라 준공금을 과다 지급하였다.

[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외 사용 등 지급 현황

연도	공사명	도급자	지급금액	회수액	사용불가항목	비고
계	6건		139,660,920	1,608,834		제경비 포함
2023	□□□ □□□□ □ □□□□	◇◇◇◇(◇)	20,544,000	278,834	안전표지판	
2024	□□□□ □□□□ □□□□□□	◇◇◇◇(◇)	20,633,000	165,000	안전표지판	
2024	□□□□ □□ □□ □□□□(□□□)	◇◇◇◇◇◇ ◇◇	20,497,000	150,000	안전표지판	
2025	□□□□ □□ □□□□ (□□□)	◇◇◇◇◇◇ ◇◇	18,634,000	200,000	안전표지판	
2025	□□□□ □□ □□□□	◇◇◇◇(◇)	18,005,000	240,000	안전표지판	
2025	□□□ □□□ □□□□	◇◇◇◇◇◇ (◇)	41,347,920	575,000	미증빙	

□ 처분지시

- 골약동장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로 부당하게 지급한 1,608,830원에 대하여는 회수 조치하시기 바라며, (시정)
- 앞으로는 안전관리비 집행(정산) 증빙자료의 확인을 철저히 하여 부당 사용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현지처분지시서

2026년도 골약동 종합감사(자체) 시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 지시하니, 조속히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종합감사 처분 결과 보고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본 조치지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때는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따라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5.

감사반장 ○○○ (인)

소 속	시행년도	지적결과 (주의, 개선 등)	재정상 조치		조치인원
			방 법	금 액(원)	
골약동	2023~2026	시정	회수	1,433,3000	-

☐ 제 목: 건설공사 대금 지급 정산 부적정

☐ 내 용

1. 관련규정 및 판단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26조의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설공사 도급계약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건설사업자에게 보험료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준공대가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준공대금 청구 시 원가계산서에 계상된 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받아 상기 기준에 따른 사용과 증빙 자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는 감액조정하거나 반환 요구하여야 하며, 감액조정에 따른 정산내역이 부적정 시 청구내역을 반송하여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골약동에서는 [표1]과 같이 공사산출내역서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료가 계상되어 있으나, 건설업자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의 기재사항이 포함된 가입 및 납부증명원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보험료를 정산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1] 보험료 정산 내역

(단위: 원)

연도	공사명	도급자	지급금액	회수액 (원단위절사)	보험료 계상 내역		비고
					고용	산재	
계	6건		113,362,660	1,433,309	66,697	244,336	
2023	□□□ □□□□□□□□	◇◇◇◇	14,049,200	80,989	80,989	296,695	고용보험 미가입
2025	□□□□ □□□□ □□□□	◇◇	20,582,040	67,179	14,847	52,332	미증빙
2025	□□□□ □□□□ □□□□	◇◇◇◇◇◇◇◇	11,658,500	154,117	34,061	120,056	미증빙
2025	□□□□ □□ □□□□	◇◇◇◇	13,960,000	244,690	54,078	190,612	고용보험 미가입, 미증빙
2025	□□□□ □□□□ □□□□	◇◇◇◇	11,765,000	187,737	41,491	146,246	미증빙
2025	□□□ □□□□ □□□□	◇◇◇◇◇◇◇◇ (◇)	41,347,920	698,597	154,394	544,203	미증빙

□ 처분지시

- 골약동장은 부당하게 정산된 공사 대금 1,433,300원에 대하여 회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공사대금
정산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감사결과 현지처분지시서

2026년도 골약동 종합감사(자체) 시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 지시하니, 조속히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종합감사 처분 결과 보고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본 조치지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때는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따라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5.

감사반장 ○○○ (인)

소 속	시행년도	지적결과 (주의, 개선 등)	재정상 조치		조치인원
			방 법	금 액(원)	
골약동	2023~2026	주의	-	-	-

☐ 제 목: 건설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설정 부적정

☐ 내 용

1. 관련규정 및 판단기준

- 「건설산업 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1항(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의거,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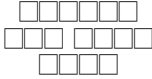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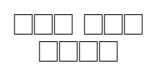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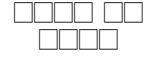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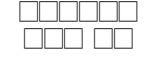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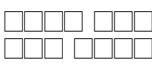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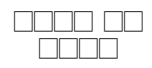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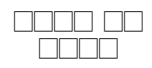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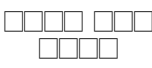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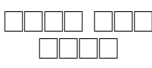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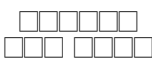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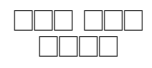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그러나, 골약동에서는 [표]와 같이 건설공사 하자보수보증기간을 설정하면서 준공검사 완료일로 하지 않고, 준공검사 완료일이 아닌 다른 날을 하자보수 담보기간으로 설정하였다.

【표】 건설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부적정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계약금액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준공검사일	도급자	하자보수기간	부적정 내역
□□□□ □□ □□□ □□□□	18,938	2024.7.29.	2024.7.31.	2024.8.28.	2024.8.29.	◇◇◇◇(◇)	3년 (2024. 8. 28. ~ 2027. 8. 27.)	하자담보책임기간 시작일 부적정 (8. 28. → 8. 29.)
□□□□ □□□□ □□□□	7,683	2024.7. 10.	2024.7. 17.	2024.8.8.	2024.8. 12.	◇◇◇◇	2년 (2024. 8. 13. ~ 2026. 8. 12.)	하자담보책임기간 시작일 부적정 (8. 13. → 8. 12.)
□□□□ □□□□ □□ □□□□	14,588	2024.8. 13.	2024.8. 13.	2024.9. 10.	2024.9. 11.	(◇)◇◇◇◇ ◇◇◇◇◇◇	2년 (2024. 9. 10. ~ 2026. 9. 09.)	하자담보책임기간 시작일 부적정 (9. 10. → 9. 11.)
□□□□ □□ □□□□	15,924	2024. 12. 3.	2024. 12. 6.	2024. 12. 23.	2024. 12. 24.	◇◇◇◇◇◇ ◇(◇)	2년 (2024. 12. 23. ~ 2026. 12. 22.)	하자담보책임기간 시작일 부적정 (12. 23. → 12. 24.)
□□□□ □□□□ □□□□□□	20,871	2024. 12. 4.	2024. 12. 6.	2024. 12. 24.	2024. 12. 26.	◇◇◇◇(◇)	1년 (2024. 12. 24. ~ 2025. 12. 23.)	하자담보책임기간 시작일 부적정 (12. 24. → 12. 26.)
□□□ □□□□□□	8,300	2024. 12. 12.	2024. 12. 13.	2024. 12. 23.	2024. 12. 24.	◇◇◇◇	2년 (2024. 12. xx. ~ 2026. 12. xx.)	하자담보책임기간 시작일 부적정 (12. xx. → 12. 24.)
□□□□ □□ □□□□ □□□□	8,820	2024. 12. 13. .	2024. 12. 13.	2024. 12. 19.	2024. 12. 24.	(◇)◇◇◇◇ ◇	3년 (2024. 12. 19. ~ 2027. 12. 18.)	하자담보책임기간 시작일 부적정 (12. 19. → 12. 24.)
□□□□ □□□□ □□□ □□□□	13,708	2024.5. 13.	2024.5. 13.	2024. 11. 11.	2024. 11. 14.	◇◇◇◇(◇)	3년 (2024. 11. 12. ~ 2027. 11. 11.)	하자담보책임기간 시작일 부적정 (11. 12. → 11. 14.)
□□□□ □□ □□□ □□	17,456	2024.6. 17.	2024.6. 20.	2024.7. 10.	2024.7. 16.	◇◇◇◇(◇)	2년 (2024. 7. 10. ~ 2026. 7. 9.)	하자담보책임기간 시작일 부적정 (7. 10. → 7. 16.)
□□□□□□ □□□□□□ □□□□ □□	6,389	2025.2.27.	2025.3.4.	2025.3. 18.	2025.3.20.	◇◇◇◇	3년 (2025. 3. 21. ~ 2028. 3. 20.)	하자담보책임기간 시작일 부적정 (3. 21. → 3. 20.)
□□□□ □□□□ □□□□	7,260	2025.3. 11.	2025.3. 11.	2025.3.24.	2025.3.25.	◇◇◇◇◇◇	3년 (2025. 3. 24. ~ 2028. 3. 23.)	하자담보책임기간 시작일 부적정 (3. 24. → 3. 25.)
□□□□ □□ □□□□	12,350	2025.5.7.	2025.5. 12.	2025.5.29.	2025.6.4.	◇◇◇◇(◇)	2년 (2025. 5. 29. ~ 2027. 5. 28.)	하자담보책임기간 시작일 부적정 (5. 29. → 6. 4.)
□□□□ □□□□ □□□□	20,729	2025.4.22.	2025.4.24.	2025.5.22.	2025.5.28.	◇◇	2년 (2025. 5. 23. ~ 2027. 5. 22.)	하자담보책임기간 시작일 부적정 (5. 23. → 5. 28.)
□□□□ □□□□ □□□□	11,658	2025.4. 18.	2025.4.23.	2025.5.21.	2025.5.28.	◇◇◇◇◇◇ ◇	3년 (2025. 5. 21. ~ 2028. 5. 20.)	하자담보책임기간 시작일 부적정 (5. 21. → 5. 28.)
□□□□ □□□□ □□	7,840	2025.4.22.	2025.4.23.	2025.5.21.	2025.5.28.	◇◇◇◇(◇)	3년 (2025. 5. 21. ~ 2028. 5. 20.)	하자담보책임기간 시작일 부적정 (5. 21. → 5. 28.)

사업명	계약 금액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준공검사일	도급자	하자보수기간	부적정 내역
	18,914	2025.4.15.	2025.4.17.	2025.5.15.	2025.5.22.	(◇)◇◇◇◇ ◇◇	1년 (2025. 5. 15. ~ 2026. 5. 14)	하자담보책임기간 시작일 부적정 (5. 15. → 5. 22.)
	8,720	2025.4.8.	2025.4.10.	2025.4.29.	2025.5.2.	◇◇◇◇◇◇	3년 (2025. 4. 29. ~ 2028. 4. 28.)	하자담보책임기간 시작일 부적정 (4. 29. → 5. 2.)
	9,496	2025.3.26.	2025.4.1.	2025.4.29.	2025.5.1.	(◇)◇◇◇◇ ◇◇	2년 (2025. 4. 29. ~ 2027. 4. 28.)	하자담보책임기간 시작일 부적정 (4. 29. → 5. 1.)
	14,155	2025.7.9.	2025.7.9.	2025.7.28.	2025.8.1.	◇◇◇◇◇◇	2년 (2025. 12. 20. /2028. 7. 23.)	하자담보책임기간 시작일 부적정
	18,796	2025.6.25.	2025.7.1.	2025.7.11.	2025.7.17.	(◇)◇◇◇◇ ◇	3년 (2025. 7. 11. ~ 2028. 7. 10.)	하자담보책임기간 시작일 부적정 (7. 1. → 7. 17.)
	18,924	2025.3.13.	2025.2.13.	2025.3.10.	2025.3.14.	◇◇◇◇◇(◇)	3년 (2025. 3. 10. ~ 2028. 3. 09.)	하자담보책임기간 시작일 부적정 (3. 10. → 3. 14.)
	12,911	2025.2.17.	2025.2.17.	2025.3.14.	2025.3.20.	(◇)◇◇◇◇ ◇	3년 (2025. 3. 14. ~ 2028. 3. 13.)	하자담보책임기간 시작일 부적정 (3. 14. → 3. 20.)
	18,054	2025.4.4.	2025.4.8.	2025.5.6.	2025.5.12.	◇◇◇◇◇(◇)	3년 (2025. 5. 6. ~ 2028. 5. 5.)	하자담보책임기간 시작일 부적정 (5. 6. → 5. 12.)
	8,820	2025.2.19.	2025.2.24.	2025.3.11.	2025.3.14.	◇◇◇◇◇◇	2년 (2025. 3. 11. ~ 2027. 3. 10.)	하자담보책임기간 시작일 부적정 (3. 11. → 3. 14.)
	15,430	2025.3.21.	2025.3.24.	2025.4.21.	2025.4.25.	◇◇◇◇◇(◇)	2년 (2025. 4. 21. ~ 2027. 4. 20.)	하자담보책임기간 시작일 부적정 (4. 21. → 4. 25.)
	7,901	2025.3.14.	2025.3.14.	2025.3.27.	2025.4.2.	◇◇◇◇◇◇ ◇	2년 (2025. 3. 27. ~ 2027. 3. 26.)	하자담보책임기간 시작일 부적정 (3. 27. → 4. 2.)
	41,600	2025.2.12.	2025.2.14.	2025.3.25.	2025.4.1.	◇◇◇◇◇◇ ◇(◇)	2년 (2025. 3. 25. ~ 2027. 3. 24.)	하자담보책임기간 시작일 부적정 (3. 25. → 4. 1.)

☐ 처분지시

- 골약동장은 「건설산업 기본법」 등을 숙지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현지처분지시서

2026년도 골약동 종합감사(자체) 시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 지시하니, 조속히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종합감사 처분 결과 보고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본 조치지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때는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따라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5.

감사반장 ○○○ (인)

소 속	시행년도	지적결과 (주의, 개선 등)	재정상 조치		조치인원
			방 법	금 액(원)	
골약동	2023~2026	시정, 주의	-	-	-

☐ 제 목: 하자보증이행 보증확보 소홀

☐ 내 용

1. 관련규정 및 판단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률에 정한 면제대상을 제외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한을 정하여 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계약의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규정되어 있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하자보수보증금률) 제2항 제3호에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는 제외한다)”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 제5항에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및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의 경우에는 제37조제2항·제4항 및 제38조를 준용하며 이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그러나, 골약동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하자보수보증서 징구하지 않아 하자보증 이행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하자보수보증서 미징구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계약금액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준공 검사일	도급자	비 고
□□□□ □□□ □□□□	9,755	2025.6.25.	2025.6.30.	2025.7.18.	2025.7.25.	(◇)◇◇◇◇	하자보수보증 서 미징구

□ 처분지시

- 골약동장은 미징구된 하자보수보증서를 징구하고(시정), 앞으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하자보증서 징구 등 하자보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감사결과 현지처분지시서

2026년도 골약동 종합감사(자체) 시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 지시하니, 조속히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종합감사 처분 결과 보고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본 조치지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때는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따라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5.

감사반장 ○○○ (인)

소 속	시행년도	지적결과 (주의, 개선 등)	재정상 조치		조치인원
			방 법	금 액(원)	
골약동	2023~2026	주의	-	-	-

☐ 제 목: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 미수립 및 품의 작성 소홀

☐ 내 용

1. 관련규정 및 판단기준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4.업무추진비(203목)에 따르면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하여야 하고,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골약동에서는 업무추진비 집행 품의서를 작성하면서 아래 [표 1]와 같이 집행대상 등을 명시하지 않고 집행하여 집행대상(인원) 기재 소홀로 기준 단가 준수 여부를 판단할 수 없게 되는 등 품의서 작성을 소홀히 하였다.

[표1] 업무추진비 집행 소홀

연월일	내용	금액	비고
2023.5.17.	주민자치위원회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활동 참석자 식비 집행	180,000	참석대상(인원) 누락
2024.3.12.	현안업무 추진 직원 격려 식비 집행	80,000	참석대상(인원) 누락
2024.3.22.	현안업무 추진 직원 격려 식비 집행	319,000	참석대상(인원) 누락
2024.3.29.	현안업무 추진 직원 격려 식비 집행	56,000	참석대상(인원) 누락
2024.4.3.	현안업무 추진 직원 격려 식비 집행	173,000	참석대상(인원) 누락
2024.4.3.	동정업무 추진 직원 격려 식비 집행	173,000	참석대상(인원) 누락
2024.4.8..	선거업무 추진 직원 격려 식비 집행	238,500	참석대상(인원) 누락
2024.4.5.	골약동 민원업무 수행직원 격려 식비	54,000	참석대상(인원) 누락
2024.4.11.	사회복지 업무 추진 직원 격려 식비 집행	48,000	참석대상(인원) 누락
2024.4.23.	민원업무 추진 직원 격려 식비 집행	67,000	참석대상(인원) 누락
2024.4.24.	시민과의 대화 추진 직원 노고 격려 식비 집행	129,000	참석대상(인원) 누락
2024.4.25.	총무팀 직원 노고 격려 식비 집행	52,000	참석대상(인원) 누락
2024.4.26.	골약중학교 교원관계자 간담회에 따른 식비 집행	99,000	참석대상(인원) 누락
2024.12.5.	현안업무 추진 직원 격려 식비 집행	321,000	참석대상(인원) 누락
2025.10.24.	현안업무 추진 직원 격려 식비 집행	92,000	참석대상(인원) 누락
2025.11.24.	공공비축미곡 매입 업무 추진 직원 격려 식비 집행	132,000	참석대상(인원) 누락
2025.11.21.	주민숙원사업 추진 직원 격려 식비 집행	98,000	참석대상(인원) 누락

□ 처분지시

- 골약동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 수립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회계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현지처분지시서

2026년도 골약동 종합감사(자체) 시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 지시하니, 조속히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종합감사 처분 결과 보고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본 조치지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때는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따라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5.

감사반장 ○○○ (인)

소 속	시행년도	지적결과 (주의, 개선 등)	재정상 조치		조치인원
			방 법	금 액(원)	
골약동	2023~2026	주의	-	-	-

☐ 제 목: 공용차량 관리에 따른 기록관리 소홀

☐ 내 용

1. 관련규정 및 판단기준

- 「광양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22조에 따르면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에 전자문서 등으로 차량 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동 규칙 26조에 따르면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관리대장, 차량배차신청(승인)서, 차량유류수불대장, 차량정비대장, 차량운행일지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 매일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그러나 골약동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서울행정시스템 상에서 배차신청 후 배차신청·승인 77건을 결재받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차량배차결재 미승인 현황 목록

연번	승인일자	사용자	배차여부	운행일지	배차신청결재	배차승인결재
1	20240730	○○○	배차승인	작성완료	결재진행(서울)	결재완료
2	20251217	○○○	배차승인	작성완료	결재완료	미전송
3	20251210	○○○	배차승인	작성완료	결재완료	미전송
4	20251208	○○○	배차승인	작성완료	결재완료	미전송
5	20251121	○○○	배차승인	작성완료	결재완료	미전송
6	20251119	○○○	배차승인	작성완료	결재완료	미전송
7	20251113	○○○	배차승인	작성완료	결재완료	미전송
8	20251023	○○○	배차승인	작성완료	결재완료	미전송
9	20251022	○○○	배차승인	작성완료	결재완료	미전송
10	20251017	○○○	배차승인	작성완료	결재완료	미전송
11	20251016	○○○	배차승인	작성완료	결재완료	미전송
12	20251015	○○○	배차승인	작성완료	결재완료	미전송
13	20251014	○○○	배차승인	작성완료	결재완료	미전송
14	20250925	○○○	배차승인	작성완료	결재완료	미전송
15	20250924	○○○	배차승인	작성완료	결재완료	미전송
16	20250923	○○○	배차승인	작성완료	결재완료	미전송
17	20250917	○○○	배차승인	작성완료	결재완료	미전송
18	20250909	○○○	배차승인	작성완료	결재완료	미전송
19	20250904	○○○	배차승인	작성완료	결재완료	미전송
20	20250828	○○○	배차승인	작성완료	결재완료	미전송
21	20250827	○○○	배차승인	작성완료	결재완료	미전송
22	20250821	○○○	배차승인	작성완료	결재완료	미전송
23	20250814	○○○	배차승인	작성완료	결재완료	미전송
24	20250813	○○○	배차승인	작성완료	결재완료	미전송
25	20250801	○○○	배차승인	작성완료	반송	미전송
26	20250729	○○○	배차승인	작성완료	결재완료	미전송
27	20250729	○○○	배차승인	작성완료	결재완료	미전송
28	20250718	○○○	배차승인	작성완료	결재완료	미전송
29	20250703	○○○	배차승인	작성완료	결재완료	미전송
30	20250604	○○○	배차승인	작성완료	결재완료	미전송

연번	승인일자	사용자	배차여부	운행일지	배차신청결재	배차승인결재
31	20250602	○○○	배차승인	작성완료	결재완료	미전송
32	20250602	○○○	배차승인	작성완료	결재완료	미전송
33	20250423	○○○	배차승인	작성완료	반송	미전송
34	20250421	○○○	배차승인	작성완료	결재완료	미전송
35	20250409	○○○	배차승인	작성완료	결재완료	미전송
36	20250408	○○○	배차승인	작성완료	결재완료	미전송
37	20250407	○○○	배차승인	작성완료	결재완료	미전송
38	20250406	○○○	배차승인	작성완료	결재완료	미전송
39	20250405	○○○	배차승인	작성완료	결재완료	미전송
40	20250331	○○○	배차승인	작성완료	결재완료	미전송
41	20250330	○○○	배차승인	작성완료	결재완료	미전송
42	20250325	○○○	배차승인	작성완료	결재완료	미전송
43	20250319	○○○	배차승인	작성완료	결재완료	미전송
44	20250228	○○○	배차승인	작성완료	결재완료	미전송
45	20250207	○○○	배차승인	작성완료	결재완료	미전송
46	20250205	○○○	배차승인	작성완료	결재완료	미전송
47	20250116	○○○	배차승인	작성완료	결재완료	미전송
48	20250108	○○○	배차승인	작성완료	결재완료	미전송
49	20250106	○○○	배차승인	작성완료	결재완료	미전송
50	20241231	○○○	배차승인	작성완료	결재완료	미전송
51	20241226	○○○	배차승인	작성완료	결재완료	미전송
52	20241224	○○○	배차승인	작성완료	결재완료	미전송
53	20241223	○○○	배차승인	작성완료	결재완료	미전송
54	20241219	○○○	배차승인	작성완료	반송	미전송
55	20241218	○○○	배차승인	작성완료	결재완료	미전송
56	20241216	○○○	배차승인	작성완료	결재완료	미전송
57	20241213	○○○	배차승인	작성완료	반송	미전송
58	20241211	○○○	배차승인	작성완료	결재완료	미전송
59	20241210	○○○	배차승인	작성완료	결재완료	미전송
60	20241206	○○○	배차승인	작성완료	반송	미전송
61	20241125	○○○	배차승인	작성완료	결재완료	미전송
62	20241118	○○○	배차승인	작성완료	결재완료	미전송

연번	승인일자	사용자	배차여부	운행일지	배차신청결재	배차승인결재
63	20241113	○○○	배차승인	작성완료	결재완료	미전송
64	20241104	○○○	배차승인	작성완료	결재완료	미전송
65	20241024	○○○	배차승인	작성완료	결재완료	미전송
66	20241021	○○○	배차승인	작성완료	반송	미전송
67	20241018	○○○	배차승인	작성완료	결재완료	미전송
68	20241007	○○○	배차승인	작성완료	결재완료	미전송
69	20241002	○○○	배차승인	작성완료	결재완료	미전송
70	20240926	○○○	배차승인	작성완료	결재완료	미전송
71	20240925	○○○	배차승인	작성완료	결재완료	미전송
72	20240923	○○○	배차승인	작성완료	결재완료	미전송
73	20240913	○○○	배차승인	작성완료	결재완료	미전송
74	20240909	○○○	배차승인	작성완료	결재완료	미전송
75	20240902	○○○	배차승인	작성완료	결재완료	미전송
76	20240829	○○○	배차승인	작성완료	결재완료	미전송
77	20240828	○○○	배차승인	작성완료	결재완료	미전송

□ 처분지시

- 골약동장은 「광양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현지처분지시서

2026년도 골약동 종합감사(자체) 시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 지시하니, 조속히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종합감사 처분 결과 보고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본 조치지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때는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따라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5.

감사반장 ○○○ (인)

소 속	시행년도	지적결과 (주의, 개선 등)	재정상 조치		조치인원
			방 법	금 액(원)	
골약동	2023~2026	주의	-	-	-

☐ 제 목: 통합민원창구·무인민원발급기 용지 관리자 미지정 및 발급용지 관리 소홀

☐ 내 용

1. 관련규정 및 판단기준

- 인감증명서 발급용지는 한국조폐공사가 제작하여 공급하는 복사방지를 위한 특수용지를 사용해야 하며 「2020.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 및 용지관리 지침에 의하면 용지유출에 따른 인감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평소 용지를 이중 캐비닛에 보관하고, 관리자를 명확히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용지관리 책임자: 시군구 담당과장, 읍면동장 / 용지보관장소 열쇠관리자: 인감 또는 서명확인 담당공무원)

- 인감용지 사용량은 「2020.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에 따라 일일결산(담당계장 전결)하여야 하며 발급용지 관리 지침에는 용지 일일 결산 실시 후 대장으로 편철·보관하여 용지의 사용 및 유·출입을 명확히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민원지적과-11243(2016. 3. 18.)호 ‘광양시 무인민원발급창구 보안계획서’ 및 민원지적과-49694(2018. 11. 29.)호 무인민원발급창구 발급용지 관리 주의사항에 의하면 ▶용지 관리책임자 지정 운영 및 용지 외부노출 금지 ▶용지 보관 장소 잠금장치 철저 ▶용지 수불대장 작성·비치 하여 정확히 관리하여 용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골약동에서는 2024. 2. 5. 이후부터 2025. 9. 25. 까지 담당공무원 등의 인사발령이 있었음에도 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았으며 2023. 3. 1. ~ 6. 20. 해당기간 동안 일일처리 현황 및 용지수불내역이 누락되는 등 용지 수불내역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처분지시

- 골약동장은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통합민원창구·무인민원발급기 용지 관리자 지정 및 용지 보관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현지처분지시서

2026년도 골약동 종합감사(자체) 시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 지시하니, 조속히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종합감사 처분 결과 보고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본 조치지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때는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따라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5.

감사반장 ○○○ (인)

소 속	시행년도	지적결과 (주의, 개선 등)	재정상 조치		조치인원
			방 법	금 액(원)	
골약동	2023~2026	주의	-	-	-

☐ 제 목: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 수리 시 확인·검토 소홀

☐ 내 용

1. 관련규정 및 판단기준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17세 이상인 사람에 한한다)이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 대리인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과 함께 위임자 본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2020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 인감증명서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의 작성방법에 따르면 업무담당자는 위임자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신분증 종류, 위임사유 등 및 위임장의 유효기간(위임일로부터 6개월까지)을 확인하고 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골약동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23. 3.부터 2026. 2.까지 위임장에 위임일자 등의 기재를 누락하거나 미기재된 위임장 수리, 위임장 분실, 발급대장에 위임사항 기재 누락 등 인감증명서 위임 업무에 소홀히 하였다.

【 표 】 인감증명 대리발급 위임장 및 인감증명 발급대장 기재 누락사항

연번	신 청 일	위임자	대리인	인감증명 위임장 및 발급대장 기재누락 사항
1	20230306	○○○	◇◇◇	발급대장 인감신고인
2	20230804	○○○	◇◇◇	위임일자
3	20230918	○○○	◇◇◇	위임일자
4	20240213	○○○	◇◇◇	발급대장
5	20240229	○○○	◇◇◇	발급대장
6	20240304	○○○	◇◇◇	발급대장
7	20240909	○○○	◇◇◇	위임일자
8	20250121	○○○	◇◇◇	발급대장 대리인
9	20250225	○○○	◇◇◇	위임일자
10	20250304	○○○	◇◇◇	발급대장 대리인
11	20250306	○○○	◇◇◇	발급대장
12	20250327	○○○	◇◇◇	발급대장
13	20250414	○○○	◇◇◇	접수서류
14	20250625	○○○	◇◇◇	발급대장
15	20251015	○○○	◇◇◇	발급대장
16	20251110	○○○	◇◇◇	위임일자
17	20251110	○○○	◇◇◇	위임일자
18	20260102	○○	◇◇◇	발급대장

☐ 처분지시

- 골약동장은 「인감증명법」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감증명 위임발급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현지처분지시서

2026년도 골약동 종합감사(자체) 시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 지시하니, 조속히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종합감사 처분 결과 보고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본 조치지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때는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따라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5.

감사반장 ○○○ (인)

소 속	시행년도	지적결과 (주의, 개선 등)	재정상 조치		조치인원
			방 법	금 액(원)	
골약동	2023~2026	주의	-	-	-

☐ 제 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사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소홀

☐ 내 용

1. 관련규정 및 판단기준

-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중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 개정에 따라 급여관리(사용)실태 점검 대상 주기와 급여 관리 점검 절차가 신설·개선되어 급여관리자 지정 시점과 상관없이 2022년부터는 급여관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예외없이 모두 실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또는 「민법」상 3촌 이내 친족이 급여관리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연 1회 현장 방문 후 급여관리 점검표를 작성하여 점검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수급자와 주거를 달리하는 직계존·비속 및 친족,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 하는 「민법」상 3촌 이내 친족이 아닌 자가 급여관리자로 지정된 경우, 시설 입소자 또는 무연고 장기입원자, 위탁부모, 이웃, 지역인사 등이 급여관리자로 지정된 경는 반기별 1회 현장 방문으로 급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하고,

- 주민복지과-4533(2023.2.21.), 12691(2023.12.13.), 2675(2024.1.30.), 288374(2024.11.25.), 3485(2025.1.31.), 28275(2025.11.5.)호와 관련 ‘생계급여 기초수급자 중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대상자 일제점검 실시’ 공문에 따라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 관리 대상자 명단을 정비 관리하여야 하고 급여관리 유형에 따라 현장 방문하여 수급자의 생활 실태 및 급여관리자의 급여관리 실태(통장소지자, 급여사용처, 현금인출 여부 및 수급자의 생계 등과 무관한 용도로의 급여사용 여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현장확인 미실시

-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유형에 따라 반기별 또는 연 1회 현장 확인 후 급여관리 점검표를 작성하여 점검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하나, 2024년 생활실태 확인을 위한 현장 방문 없이 급여관리자가 제출한 지출내역과 영수증 확인만으로 급여 관리 점검을 실시하였다.

[표]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현장확인 실시 현황

연 도	내 용	현장확인	관련호
2023년	의사무능력자 점검계획 수립 및 결과 제출	6. 27. ~ 7. 3.	골약동-4742(2023.7.14.)
2024년	2024년 의사무능력(미약)자 점검계획 알림	미실시	없음
2025년	2025년 의사무능력자 점검계획 알림	6. 23. ~ 6. 30. 12. 8. ~ 12. 26.	골약동-3415(2025.7.16.) 골약동-18390(2025.12.31.)

나.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지정동의서 등 관련 서류 누락

-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자 지정 시 [표]와 같이 급여관리 점검 대상에 대해서는 지정서 작성 및 교부, 동의서 작성 등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급여관리 사실 및 책임 인지를 유도하도록 되어 있으나, 급여관리 점검을 실시하면서 급여관리 지정동의서, 급여관리 지정서를 누락하였다.

[표] '22년 지침 개정 이후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지정동의서 징구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장애유형	가구유형	점검주기	지정일자	징구일자	비고
○○○	◇◇◇◇-◇◇-◇◇	□□	장애인	반기	◇◇◇◇-◇◇-◇◇	◇◇◇◇	
○○○	◇◇◇◇-◇◇-◇◇	□□	장애인	반기	◇◇◇◇-◇◇-◇◇	◇◇◇◇	
○○○	◇◇◇◇-◇◇-◇◇	□□	장애인	반기	◇◇◇◇-◇◇-◇◇	◇◇◇◇-◇◇	
○○○	◇◇◇◇-◇◇-◇◇	□□	장애인	반기	◇◇◇◇-◇◇-◇◇	◇◇◇◇-◇◇-◇◇	
○○○	◇◇◇◇-◇◇-◇◇	□□	장애인	반기	◇◇◇◇-◇◇-◇◇	◇◇◇◇	
○○○	◇◇◇◇-◇◇-◇◇	□□	장애인	연 1회	◇◇◇◇-◇◇-◇◇	◇◇◇◇-◇◇	

다. 복지급여 본인관리 확인서 징구 및 담당자 의견 누락

- 급여 관리·사용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수급자이나, 타인이 급여를 관리하는 것을 희망하지 않아 급여관리자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 복지급여 본인관리 확인서를 수급자로부터 제출받아 개별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 후 담당자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나 누락하였다.

[표] '22년 지침 개정 이후 본인관리 확인서 징구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장애유형	가구유형	점검주기	지정일자	징구일자	비고
○○○	◇◇◇◇-◇◇-◇◇	□□	장애인	반기	◇◇◇◇-◇◇-◇◇	◇◇◇◇-◇◇-◇◇ ◇◇◇◇-◇◇ ◇◇◇◇-◇◇	의견기록
○○○	◇◇◇◇-◇◇-◇◇	□□	장애인	반기	◇◇◇◇-◇◇-◇◇	◇◇◇◇-◇◇-◇◇	의견기록
○○○	◇◇◇◇-◇◇-◇◇	□□	장애인	반기	◇◇◇◇-◇◇-◇◇	◇◇◇◇-◇◇-◇◇	의견없음

□ 처분지시

- 골약동장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의사무능력자의 급여관리 개정사항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급여관리실태 점검대상 및 주기를 확인하고 현장 점검으로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급여관리자 지정동의서, 급여관리점검표, 급여관리지정동의서를 빠짐없이 징구할 수 있도록 급여관리 사용실태 점검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주의)

감사결과 현지처분지시서

2026년도 골약동 종합감사(자체) 시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 지시하니, 조속히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종합감사 처분 결과 보고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본 조치지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때는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따라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5.

감사반장 ○○○ (인)

소 속	시행년도	지적결과 (주의, 개선 등)	재정상 조치		조치인원
			방 법	금 액(원)	
골약동	2023~2026	주의	-	-	-

☐ 제 목: 자활근로사업 추진 소홀

☐ 내 용

1. 관련규정 및 판단기준

- 주민복지과-734(2023.1.10.), 974(2024.1.11.), 1452(2025.1.8.)호와 관련하여 ‘지자체 직접시행 자활근로사업 추진 계획’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근로 능력 정도에 맞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근로능력이 미약한 조건부수급자 등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개인별 자립능력을 향상을 지원하는 직접시행 자활근로사업 추진 시 자활근로사업자 재해예방지침을 수립·시행하고 당해 연도 사업 개시 전 참여자 전원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지자체 직접시행 자활근로 복지도우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2023년,

2024년, 2025년 자활근로사업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고,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안전교육 또한 실시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표] 자활근로사업 재해예방대책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 현황

연 도	추진계획 통보(문서번호)	재해예방대책 수립	안전교육 실시
2023년	주민복지과-734(2023.1.10.)호	없음	없음
2024년	주민복지과-974(2024.1.11.)호	없음	없음
2025년	주민복지과-1452(2025.1.8.)호	없음	없음

☐ 처분지시

- 골약동장은 2026년 지자체 직접시행 자활근로사업 추진 계획(안) 행정사항 내용 등을 참고하여 자활근로자(복지도우미) 안전교육 실시 등 재해예방대책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현지처분지시서

2026년도 골약동 종합감사(자체) 시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 지시하니, 조속히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종합감사 처분 결과 보고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본 조치지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때는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따라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5.

감사반장 ○○○ (인)

소 속	시행년도	지적결과 (주의, 개선 등)	재정상 조치		조치인원
			방 법	금 액(원)	
골약동	2023~2026	주의	-	-	-

☐ 제 목: 등록장애인 자격 관리 소홀

☐ 내 용

1. 관련규정 및 판단기준

- 보건복지부 발행 「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 2-5 등록장애인의 재판정 2.재판정 유형 ②재판정 절차에 따라 장애인 담당자는 적어도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에게 재진단(판정) 기한 3개월 전에 장애 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를 하여야 하며, 재진단(판정) 기한 1개월 전에 재판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서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제2항제1호에 따라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 반환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나, 동조 동항 동호 단서조항이 신설('24.2.13.시행)되어 장애인 사망으로 인한 장애인 등록 취소의 경우 장애인등록증 반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다만, 보건복지부 「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 제87조 제2호의2 신설에 따라 사망한 장애인의 장애인 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장애인등록증의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처벌이 강화되었으므로 유족 등에게 이에 대해 안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등록장애인 장애 재판정 안내 기간 미준수

- [표] 와 같이 장애재진단 기한이 도래한 자에게 재판정 안내문을 적정한 일자에 통지하지 않았으며 재판정 서류 미제출에 대해 재판정 촉구 통지 또한 안내기한을 지키지 않았고, 기한 내 재판정을 이행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후속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표] 장애 재판정 대상자 재판정 절차 이행 현황

성명	생년월일	장애유형	재진단 기한	재판정 실시	안내 기준일	재판정 안내	촉구 기준일	재판정 촉구
○○○	◇◇◇◇◇◇◇◇	□□	◇◇◇◇◇◇◇◇	◇◇◇◇◇◇◇◇	◇◇◇◇◇◇◇◇	미안내	◇◇◇◇◇◇◇◇	완료
○○○	◇◇◇◇◇◇◇◇	□□(□□□□ □)	◇◇◇◇◇◇◇◇	◇◇◇◇◇◇◇◇	◇◇◇◇◇◇◇◇	미안내	◇◇◇◇◇◇◇◇	미안내
○○○	◇◇◇◇◇◇◇◇	□□(□□□□ □)	◇◇◇◇◇◇◇◇	◇◇◇◇◇◇◇◇	◇◇◇◇◇◇◇◇	◇◇◇◇◇◇◇◇	◇◇◇◇◇◇◇◇	완료
○○○	◇◇◇◇◇◇◇◇	□□	◇◇◇◇◇◇◇◇	◇◇◇◇◇◇◇◇	◇◇◇◇◇◇◇◇	◇◇◇◇◇◇◇◇	◇◇◇◇◇◇◇◇	◇◇◇◇◇◇◇◇
○○○	◇◇◇◇◇◇◇◇	□□	◇◇◇◇◇◇◇◇	◇◇◇◇◇◇◇◇	◇◇◇◇◇◇◇◇	◇◇◇◇◇◇◇◇	◇◇◇◇◇◇◇◇	◇◇◇◇◇◇◇◇
○○○	◇◇◇◇◇◇◇◇	□□	◇◇◇◇◇◇◇◇	◇◇◇◇◇◇◇◇	◇◇◇◇◇◇◇◇	미안내	◇◇◇◇◇◇◇◇	미안내
○○○	◇◇◇◇◇◇◇◇	□□	◇◇◇◇◇◇◇◇	◇◇◇◇◇◇◇◇	◇◇◇◇◇◇◇◇	◇◇◇◇◇◇◇◇	◇◇◇◇◇◇◇◇	완료
○○○	◇◇◇◇◇◇◇◇	□□□	◇◇◇◇◇◇◇◇	◇◇◇◇◇◇◇◇	◇◇◇◇◇◇◇◇	◇◇◇◇◇◇◇◇	◇◇◇◇◇◇◇◇	완료
○○○	◇◇◇◇◇◇◇◇	□□	◇◇◇◇◇◇◇◇	◇◇◇◇◇◇◇◇	◇◇◇◇◇◇◇◇	◇◇◇◇◇◇◇◇	◇◇◇◇◇◇◇◇	◇◇◇◇◇◇◇◇
○○○	◇◇◇◇◇◇◇◇	□□	◇◇◇◇◇◇◇◇	미실시	◇◇◇◇◇◇◇◇	◇◇◇◇◇◇◇◇	◇◇◇◇◇◇◇◇	미안내

나. 장애인등록 취소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등의 회수·폐기 관리 및

사망한 장애인의 장애인등록증 부정 사용에 대한 유족 안내 미이행

- 2024년 장애인등록 취소자에 대한 장애인등록증 미회수 및 사망한 장애인의 장애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장애인등록증의 부정 사용에 대해서 유족 등에게 안내하지 않았다.

[표] 장애인등록증 회수·폐기관리 및 부정사용 안내 이행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장애유형	변동일자	장애인등록증 회수	부정사용 안내	비고
○○○	◇◇◇◇-◇◇-◇◇	□□	◇◇◇◇-◇◇-◇◇	대상제외	미안내	사망
○○○	◇◇◇◇-◇◇-◇◇	□□(□□)	◇◇◇◇-◇◇-◇◇	대상제외	미안내	사망
○○○	◇◇◇◇-◇◇-◇◇	□□□	◇◇◇◇-◇◇-◇◇	대상제외	미안내	사망
○○○	◇◇◇◇-◇◇-◇◇	□□	◇◇◇◇-◇◇-◇◇	미회수	해당없음	본인포기
○○○	◇◇◇◇-◇◇-◇◇	□□□	◇◇◇◇-◇◇-◇◇	미발급	해당없음	본인포기

□ 처분지시

- 골약동장은 202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사망한 장애인 유족 등에게 적정 안내 및 장애재판정 절차 준수 등 등록장애인 사후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현지처분지시서

2026년도 골약동 종합감사(자체) 시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 지시하니, 조속히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종합감사 처분 결과 보고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본 조치지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때는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따라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5.

감사반장 ○○○ (인)

소 속	시행년도	지적결과 (주의, 개선 등)	재정상 조치		조치인원
			방 법	금 액(원)	
골약동	2023~2026	주의	-	-	-

☐ 제 목: 저소득 아동급식 지원사업 관리 소홀

☐ 내 용

1. 관련규정 및 판단기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 중 예산 집행절차 준수에 따르면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 조례 규칙 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회계법」 제5조(지방자치단체 회계의 원칙)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예산 집행에 있어서 관련법 및 근거 증빙자료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2023년, 2024년, 2025년 상반기까지 저소득 아동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수령증, 보안서약서,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등 예산 집행을 위한 증빙자료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

[표] 저소득 아동급식 지원사업 추진 시 증빙자료 구비 현황

연 도	해당월	누락자료	비고
2023년	6월	보안서약서, 위탁계약서	
2024년	1월 ~ 12월	보안서약서, 위탁계약서	
2025년	1월 ~ 5월	보안서약서, 위탁계약서	

☐ 처분지시

- 골약동장은 저소득 아동급식 지원사업 추진 시 급식 지원 업체와의 보안서약서,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를 누락 없이 작성하고, 지원대상 아동 가정에 전달·배부 후에는 반드시 수령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예산이 적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회계 관련 법규 및 규칙 등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현지처분지시서

2026년도 골약동 종합감사(자체) 시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 지시하니, 조속히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종합감사 처분 결과 보고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본 조치지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때는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따라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5.

감사반장 ○○○ (인)

소 속	시행년도	지적결과 (주의, 개선 등)	재정상 조치		조치인원
			방 법	금 액(원)	
골약동	2023~2026	주의	-	-	-

☐ 제 목: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추진 소홀

☐ 내 용

1. 관련규정 및 판단기준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및 보건복지부 발행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 등에 따라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서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위기가구 증가로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사회보장급여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고 편리하게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여야 하며, 위기가구 및 돌봄필요대상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을 실시하고,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 모니터링하고 발굴부터 종결까지의 사례관리를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발행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 1.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개요 II.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3.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세부내용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역할에 따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기획조사, 발굴시스템을 통한 발굴 조사), 인적 안전망 구성·운영 및 운영계획 수립으로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구성하고
- 4.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세부내용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역할에 따르면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계획수립 및 시행으로 대상자 및 해당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상담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업무 추진하면서 2023년, 2024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계획 및 2023년 복지사각지대 발굴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세부 업무절차를 미준수하였다.

[표]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추진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계획 수립 현황

연 도	내 용	문서번호	비고
2023년	없음	없음	
2024년	폭염대비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 계획 동절기 대비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 계획	골약동-9510(2024.8.14.)호 골약동-12275(2024.10.17.)호	
2025년	찾아가는 복지상담 추진계획	골약동-4199(2025.4.4.)호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을 위한 기초연금 저소득 가구 전수조사 계획	골약동-2856(2025.3.10.)호	

☐ 처분지시

- 골약동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추진계획 수립, 복지대상자 발굴, 초기상담, 사례관리의 역할 수행을 위해 관련 법규와 지침 등을 준수 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운영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현지처분지시서

2026년도 골약동 종합감사(자체) 시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 지시하니, 조속히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종합감사 처분 결과 보고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본 조치지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때는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따라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5.

감사반장 ○○○ (인)

소 속	시행년도	지적결과 (주의, 개선 등)	재정상 조치		조치인원
			방 법	금 액(원)	
골약동	2023~2026	주의	-	-	-

☐ 제 목: 건설공사 감독일지 작성 소홀

☐ 내 용

1. 관련규정 및 판단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감독자의 업무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자는 이에 따른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또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4조(성실 및 청렴의무) 제1항에 의거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사감독자 및 공사관리관(이하 이 조에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그 중 제2호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해당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 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같은 지침 제115조(공사감독자의 서류 작성·비치)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감독일지(별지 제53호 서식)를 포함하여 총 10종의 서류를 작성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그러나 골약동에서는 아래 [표] 건설공사 공사감독일지 미작성 내역 와 같이 2023년 2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시행한 “□□□ □□□□□ □ □□ □□ □□□□ 외 17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작성해야 할 서류 중 공사감독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등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건설공사 공사감독일지 미작성

연 번	연 도	사 업 명	계약금액 (천원)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도급자	공사감독	비 고
1	2023	□□□ □□□□□ □ □□□□ □□□□	20,362	23.11.27.	23.11.27.	23.12.25.	(◇)◇◇◇◇◇ ◇◇◇◇◇	○○○	
2	2023	□□□ □□ □□□□ □□□□	9,702	23.12.1.	23.12.1.	23.12.20.	◇◇◇◇◇	○○○	
3	2023	□□□□ □□ □□□□	5,821	23.7.3.	23.7.4.	23.7.17.	◇◇◇◇◇	○○○	
4	2023	□□□□ □□□ □□□□	20,900	23.2.8.	23.3.29.	23.4.26.	◇◇◇◇◇(◇)	○○○	
5	2024	□□□□ □□□ □□□ □□□□	13,708	24.5.13.	24.5.13.	24.11.11.	◇◇◇◇◇(◇)	○○○	
6	2024	□□□□ □□ □□□□	5,000	24.6.17.	24.6.17.	24.6.21.	◇◇◇◇◇(◇)	○○○	
7	2024	□□□□ □□ □□□□□	17,456	24.6.17.	24.6.20.	24.7.10.	◇◇◇◇◇(◇)	○○○	
8	2024	□□□ □□□□ □□□□□□	9,768	24.3.21.	24.3.21.	24.3.27.	◇◇◇◇◇◇◇	○○○	
9	2024	□□□□ □□□ □□□□	8,710	24.3.19.	24.4.28.	24.4.12.	◇◇	○○○	
10	2024	□□□□ □□ □□ □□□□	11,457	24.3.18.	24.3.22.	24.4.16.	◇◇◇◇◇◇◇	○○○	
11	2024	□□□□ □□□ □□□□ □ □□□□ □□	10,735	24.4.1.	24.4.5.	24.5.3.	◇◇◇◇◇◇◇	○○○	

연 번	연 도	사 업 명	계약금액 (천 원)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도급자	공사감독	비 고
12	2025	□□□□ □□□ □□□□	11,658	25.4.18.	25.4.23.	25.5.21.	◇◇◇◇◇◇◇◇	○○○	
13	2025	□□□□ □□ □□□□	12,350	25.5.7.	25.5.12.	25.5.29.	◇◇◇◇◇	○○○	
14	2025	□□□□ □□ □□□□	8,900	25.4.8.	25.4.10.	25.4.29.	◇◇◇◇◇◇◇	○○○	
15	2025	□□□ □□□ □□□□	9,496	25.3.26.	25.4.1.	25.4.29.	(◇)◇◇◇◇◇ ◇◇	○○○	
16	2025	□□□ □□□ □□□□	5,821	25.7.16.	25.7.18.	25.8.14.	◇◇◇◇◇	○○○	
17	2025	□□□ □□□ □□□□	9,370	25.4.30.	25.5.1.	25.5.19.	◇◇◇◇◇(◇)	○○○	
18	2025	□□□ □ □□□□ □□□ □□□□	8,731	25.4.29.	25.4.30.	25.5.26.	◇◇◇◇◇	○○○	

□ 처분지시

- 앞으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등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현지처분지시서

2026년도 골약동 종합감사(자체) 시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 지시하니, 조속히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종합감사 처분 결과 보고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본 조치지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때는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따라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5.

감사반장 ○○○ (인)

소 속	시행년도	지적결과 (주의, 개선 등)	재정상 조치		조치인원
			방 법	금 액(원)	
골약동	2023~2026	주의	-	-	-

☐ 제 목: 설계도서 예정가격(공사비) 작성 부적정

☐ 내 용

1. 관련규정 및 판단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고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실례 가격(법령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 범위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등을 사용한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계산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4. 다.에 의거 계약담당자는 표준품셈을 이용하여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가장 최근의 표준품셈을 이용하여야 한다.
-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 1.거래실례가격 2.원가계산에 의한 가격(건설 표준품셈) 3. 표준시장단가 4. 제1~3호에 따른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 견적가격 등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그러나, 골약동에서는 아래의 [표]와 같이, “□□□□ □□ □□□□” 외 14건에 대한 관계 서류를 검토한 결과, 설계도서를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건설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1인의 견적서로 설계도서 예정 가격(공사비)를 작성하였다.

[표] 설계도서 예정가격(공사비) 작성 부적정

연 번	연 도	사 업 명	계약금액 (천원)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도급자	비 고
1	2023	□□□□ □□ □□□□	5,821	23.7.3.	23.7.4.	23.7.17.	◇◇◇◇◇	
2	2023	□□□□ □□□ □□□□	9,751	23.9.25.	23.9.25.	23.10.10.	◇◇◇◇◇(◇)	
3	2023	□□□□ □□□□ □□□□ □□□ □□□□	9,621	23.9.27.	23.10.4.	23.10.13.	◇◇◇◇◇◇◇ (◇)	

연 번	연 도	사 업 명	계약금액 (천원)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도급자	비 고
4	2023	□□□ □□□□□ □ □□□□ □□□□	20,362	23.11.27.	23.11.27.	23.12.25.	(◇)◇◇◇◇◇	
5	2023	□□□ □□ □□□□ □□□□	9,702	23.12.1.	23.12.1.	23.12.20.	◇◇◇◇◇	
6	2023	□□□□ □□ □□□□	8,820	23.12.18.	23.12.19.	23.12.28.	◇◇◇◇◇	
7	2024	□□□ □□□□ □□ □□□□	9,768	24.3.21.	24.3.21.	24.3.27.	◇◇◇◇◇◇◇	
8	2024	□□□ □□□□ □□ □□□□	9,310	24.3.22.	24.3.25.	24.4.15.	◇◇◇◇◇(◇)	
9	2024	□□□□ □□□ □□□□	8,710	24.3.19.	24.4.28.	24.4.12.	◇◇	
10	2024	□□□□ □□ □□□□	5,000	24.6.17.	24.6.17.	24.6.21.	◇◇◇◇◇(◇)	
11	2025	□□□□□□ □□□ □□□□	5,889	25.2.26.	25.2.26.	25.3.4.	◇◇◇◇◇	
12	2025	□□□□ □□ □□□□	8,900	25.4.8.	25.4.10.	25.4.29.	◇◇◇◇◇◇	
13	2025	□□□ □□□□ □□□□	9,496	25.3.26.	25.4.1.	25.4.29.	(◇)◇◇◇◇◇ ◇◇	
14	2025	□□□ □□□□ □□□□	9,755	25.9.9.	25.9.10.	25.9.22.	(◇)◇◇◇◇◇	
15	2025	□□□□ □□□□ □□□□	9,755	25.6.25.	25.6.30.	25.7.18.	(◇)◇◇◇◇◇	

□ 처분지시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